

## 보이스피싱 발생 및 대응방안 Voice Phishing Occurrence and Counterplan

조호대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Ho-Dae Cho(jhd30@sch.ac.kr)

### 요약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어 이를 토대로 예금을 인출해가는 사기수법으로 피해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그 피해의 대상은 선량한 일반 시민으로 무차별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인·대만인 등 외국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이다. 범죄의 착수가 우리나라 국경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현재의 발생실태와 사례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현황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수법이 다양화·전문화 되면서 발전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융·통신·수사 분야에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신속한 수사의 착수와 수사관련 기법의 개발을 통해 경찰 단속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국제 범죄적 성격을 보이고 있으므로 인터폴 등 관련기관 및 국제공조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 중심어 : | 개인정보유출 | 국제공조협력 | 금융정보 | 보이스피싱 | 사기 |

### Abstract

Voice Phishing finds out personal information illegally using electrification and it is confidence game that withdraw deposit on the basis of this. It appeared by new social problem as damage instances increase rapidly. Target of the damage is invading indiscriminately to good civilian and is crime that commit by foreigners such as a most Chinese, Formosan. Voice Phishing can be crime type of new form in terms of criminal practice is achieved in the foreign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wishes to analyze present occurrence actual conditions and example, and search effective confrontation plan regarding Voice Phishing.

Voice Phishing criminal offense is growing as crime is not eradicated in spite of continuous public relations and control, and technique is diversified and specializes preferably. Hereafter, confrontation plan about problem may have to be readied in banking·communication·investigation to eradicate Voice Phishing. Also, polices control activity may have to be reinforce through quick investigation's practice and development of investigation technique, and relevant government ministry and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cooperation such as the Interpol should be reinforced because is shown international crime personality.

■ keyword : | Data Spill |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Cooperation | Financial Intelligence | Voice Phishing | Fraud |

## I. 서론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토대로 예금을 인출해가는 사기수법으로 2006년 5월에 처음 발생한 이후 많은 피해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그 피해의 대상은 선량한 일반 시민으로 무차별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중국인, 대만인 등 외국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이고 범죄의 착수가 우리나라 국경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유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 주의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재산에 대한 사적인 욕심이 과한 사람들, 또는 정보에 취약한 노인층에 한정된 범죄라는 시각이 많았다. 따라서 정부의 관련기관과 언론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면 범죄피해가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이 처음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현재, 언론 등을 통해 홍보가 되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이나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범죄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수법 또한 지능화·광역화·국제화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응과 예방, 차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현재의 발생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현황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보이스피싱의 개념

#### 1.1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의 정의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전화금융사기’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Information)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낚시하듯 낚아챈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피싱이라는 용어는 해커들이 만든 용어로 사회공학적인 방

법 및 기술적 은닉기법을 이용해서 민감한 개인 정보, 금융계정정보 등을 절도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즉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범행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음성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번호나 명의도용에 사용되어질 다른 정보를 받아서 범죄에 사용하는 것으로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Information), 낚시(Fishing)의 합성어이다.

#### 1.2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의 정의

우리나라의 경우 보이스피싱은 ‘전화금융사기’ 또는 ‘전화사기’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의 수법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자신들의 수법이 알려졌다고 판단되면 사칭기관이나 유인방법을 달리하여 새로운 수법으로 옮겨간다[1].

보이스피싱은 해커가 피해자들로부터 정보를 빼내지 않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가족 및 지인 등을 사칭하여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전화요금 연체, 검찰 및 경찰기관으로부터의 출석요구, 거짓 납치사고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을 뜻한다.

## 2. 보이스피싱의 분류

### 2.1 유인책의 성격에 따른 분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유인책을 중심으로 ‘보상제 공형’, ‘보호형’, ‘협박형’, ‘의무부과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첫째, ‘보상제공형’이란 초과 납부한 연금, 보험료, 세금 등을 환급해준다거나 경품 등에 당첨되었다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둘째, ‘보호형’이란 금융정보(신용카드나 은행계좌 관련 정보)유출이나 범죄 연루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유인하는 방식이다. 셋째, ‘협박형’은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고 속이는 형태이다. 넷째, ‘의무부과형’은 동창회 회비납부, 대학 추가합격에 따른 등록금 납부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형태를 말한다.

## 2.2 피해자 특정화에 따른 분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피해자의 특정화 여부에 따라 ‘무차별적 피해형’과 ‘피해 특정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무차별적 피해형’이란 피해자를 특정화하지 않고 익명의 다수에게 무작위적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상제공형’과 ‘보호형’이 이에 속한다. ‘피해 특정형’은 범죄자들이 사전에 입수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초로 하여 특정한 피해자를 선택하는 형태로 ‘협박형’과 ‘의무부과형’이 이에 속한다.

## 2.3 피해자 유인형태에 따른 분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피해자 유인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긍정적 유인형’과 ‘소극적 유인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긍정적 유인형’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이익 제공을 약속하며 유혹하는 것으로 ‘보상제공형’과 ‘보호형’이 이에 속한다. 소극적 유인형은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유인하는 것으로 ‘협박형’과 ‘의무 부과형’이 이에 속한다.

## 3.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

### 3.1 총책

전체적인 범죄를 조율하고 수익을 분배하며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조직과 구성원들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3.2 콜센터

거의 대부분 중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위 ‘boiler room’이라고 불리는 ‘무허가 전화중개소’와 유사한 형태의 전화 혹은 인터넷 전화시스템과 전화사기를 담당할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인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3.3 계좌개설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돈은 범죄조직이 미리 설정한 계좌로 이체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좌가 설정될 경우에는 범행 이후 추적당할 위험성이 있어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계좌개설자가 사용하지 않는 소위 ‘대포

통장’이라고 하는 타인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한다. 계좌개설팀은 은행계좌 명의를 빌려줄 적절한 사람들과 접촉하여 계좌를 만들고 이를 인출조직에게 판매하고 있다.

### 3.4 현금인출팀

현금인출팀은 중국 콜센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으로 주로 총책임자인 인출총책을 중심으로 인출팀과 전달자로 구성되어 있다.

### 3.5 환전·송금팀

환전·송금팀은 국내에서 전체적인 범죄활동을 관리하는 팀이다. 송금은 금융사기범죄가 완료되는 단계로 이들은 현금인출팀이나 전달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전문적인 불법 환전업자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후 중국이나 대만으로 송금하고 있다.

## III. 보이스피싱 현황 및 대응실태

### 1. 발생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보이스피싱은 2006년 3월, 73건의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본격화되어 2011년 1월~7월까지 3,889건이 발생, 피해액 425억, 검거건수 4,582, 검거인원 7,044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9년도 범죄피해조사 결과, 만 14세 이상 응답자 10,671명 중 71.5%가 보이스피싱 전화 및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과 대응방안이 강조되고 있다[2].

#### 1.1 발생추이

보이스피싱은 2007년 7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범정부적인 예방 및 단속강화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이스피싱의 최초 피해 사례는 2006년 5월에 발생하

였고, 동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6,188건, 62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총 3,460명이 단속되어 그 중 644명이 구속되었다.

표 1. 보이스피싱 발생현황

구 분	발생건수 (건)	피해액 (억원)	검거건수 (건)	검거인원 (명)
'09년	6,720	621	5,742	12,523
'10년	5,455	553	4,454	6,444
'11년(1~7월)	3,889	425	4,582	7,044

자료 : 2012년 경찰청 국회제출자료[4]

또한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인하여 2009년 6,720건에서 2010년 5,455건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피해액도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1.2 국적별 검거 현황

표 2. 국적별 검거인원

(단위:명)

계	중국	대만	한국	기타
22,194	1,940	592	19,634	28

자료: 2010년 경찰청 내부자료[5]

2010년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 자료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단속자 중 내국인을 제외하면 중국 국적이 1,54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대만 국적이 552명으로 두 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있다.

1.3 국외 현지범인 체포 현황

표 3. 국가별 보이스피싱 국외 현지범인 체포건수

구분	국가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9건	361명
'06년	중국	1건	61명
	대만	1건	18명
'07년	중국	2건	49명
'08년	중국	3건	152명
'09년	중국	2건	81명

자료: 2010년 경찰청 내부자료[5]

국가별 보이스피싱의 국외 현지범인을 살펴보면, 중국과 대만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검거건수에 비해서 검거인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범죄 건수별로 관련자가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1.4 메신저 피싱 발생 현황

보이스피싱의 신종 유형으로 메신저 피싱이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 폰과 테블릿 PC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하여 2009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발생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속하고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메신저 피싱 발생 및 검거현황(지방경찰청별)

구 분	'10년			'11. 7월		
	발 생	검 거	명	발 생	검 거	명
계	1,421	712	750	750	619	674
서울	693	358	372	481	349	365
부산	125	88	101	57	51	60
대구	69	41	43	25	16	17
인천	56	24	24	15	12	13
광주	28	15	13	-	-	-
대전	36	-	-	17	-	-
울산	65	40	40	25	15	15
경기	227	50	59	89	64	70
강원	15	3	3	3	16	16
충북	41	-	-	1	1	2
충남	6	11	11	26	7	13
전북	-	-	-	-	2	2
전남	17	1	1	2	4	5
경북	10	2	2	-	32	46
경남	29	74	76	9	48	48
제주	4	5	5	-	2	2

자료 : 경찰청 사이버센터, 2012년 국회제출자료[4]

1.5 피해금액 현황

표 5. 피해금액 상위 20건 사례

연 번	내 용	피해금액
1	신용카드사 사칭	2억1천만원
2	사건연루 빙자	1억4천만원
3	신용카드사 사칭	1억원
4	신용카드사 사칭	9900만원
5	카드사, 금융기관 등 사칭	9천만원
6	카드사, 금융기관 등 사칭	8500만원
7	수사기관 사칭	7900만원
8	사건연루빙자	7600만원
9	신용카드사 사칭	7200만원
10	신용카드사 사칭	7천만원
11	신용카드사 사칭	7천만원
12	수사기관 사칭	6900만원
13	카드사, 금융기관 등 사칭	6900만원
14	사건연루 빙자	6800만원
15	사건연루빙자	6800만원
16	사건연루 빙자	6700만원
17	사건연루 빙자	6300만원

18	신용카드사 사칭	6100만원
19	신용카드사 사칭	6100만원
20	신용카드사 사칭	6100만원

※ 피해금액은 신고된 금액기준으로 계좌지급정지된 경우나 미인출 금액도 포함.

자료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2008년 국회제출자료[6]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액의 상위 20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신용카드사를 사칭한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금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2. 피해사례 분석

### 2.1 공공기관 사칭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하여 과·오납 세금이나 보험금 환급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하고 직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여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이다. 금융기관, 경찰청, 검찰청, 법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예금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하며 보안코드 설정 명목으로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을 범죄조직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2.2 이동통신회사 직원을 사칭

이동통신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과납한 통신 요금에 있음을 설명한다. 이후 과납한 요금을 환불해 주겠다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금액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방법이다.

### 2.3 가족 납치가장 등과 같은 협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협박하고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사례이다. 최근의 정치적·사회적 현안 이용하는 형태이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선정되었는데 불출석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며 금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대통령 취임식 참석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이다.

## 3. 대응실태

보이스피싱은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청은 '112신고 지급정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바, 은행의 복잡한 지급정지 절차를 생략하고 112 신고 전화만으로 손쉽게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범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제도로서 예방책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둘째, '국제전화 식별번호 부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전화를 최초 접수한 각 통신사별로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유선전화의 경우에도 발신번호 앞에 식별번호가 표시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임을 쉽게 식별토록 하는 것이다.

셋째, 메신저 피싱 사범에 대한 대응이 강구되고 있다. 2009년 이후 신종 메신저 피싱 범죄가 증가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계좌', '입금' 등 사기 의심 단어 입력시 주의문구를 표출하여 시인성을 강화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메신저 메인 및 대화창 내에 「신고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피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교통방송 및 교통방송 협조 하에 홍보캠페인 방송, 한국방송광고공사 협조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공익광고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로 전국 대형 전광판(전국 104개)을 통한 홍보, 행정안전부 협조로 전국 반상회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 국회제출자료)

다섯째,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을 위한 금융제도의 개선과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8].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통해 ATM 계좌이체시 음성경고를 확대하여 시행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외국인 통장 개설시 신분확인을 위한 '외국인 정보인증 시스템'을 확대하였고, 타인에게 통장 양도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통장에 기재하였으며, 1년간 이체 실적이 없는 계좌의 이체한도를 70만원으로 축소시키는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다.

보이스피싱은 최근 범죄유형이 변형되고 있다. 첫째, 카드론 대출 유형으로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입금된 돈을 범인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이다. 둘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피싱사이트’ 유형으로 카드론 대출 유형이 급감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검찰을 사칭하여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알리고 홈페이지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피해사실을 확인토록 속이는 유형이다. 이후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CVC번호, 카드 유효기간,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셋째, 인터넷 전화를 통해 발신번호의 변작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서울 지역번호, ‘국제전화입니다.’라는 표시, 관공서의 실제 번호로 발신전화를 변작하여 속이는 경우이다. 넷째, 보이스피싱의 주범이 해외에서 범행을 시도하고 있다. 주로 해외에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여 총책의 지령을 통해 범행을 시도하고 있어 국내 수사만으로 추적과 검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 IV. 제언 및 결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수법이 다양화·전문화 되면서 발전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해하고, 서민층에서 피해자가 속출하여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각종 언론매체 및 현지방문을 통해 세부적인 범죄유형과 수법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경각심을 고취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융·통신·수사 분야에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통신 분야에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범죄조직이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관공서의 실제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한 후, 실제로 근무

하는 공무원의 성명까지 사칭하고 있는 실정이다[7]. 이에 발신번호를 조작 및 은닉, 변작하는 수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 분야의 경우 외국인 명의의 계좌개설 시 자격 기준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실정이며 위조여권을 사용한 계좌개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범행시도 차단과 추적을 위한 금융·통신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제도를 구축하여 1인의 명의로 다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한 후 범죄단에 판매하여 범행에 이용되었을 경우 동일한 명의의 타 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보이스피싱 수사와 관련하여 각 경찰서 지능팀에서 약 2,000여명이 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전담 수사인력과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수사 분야의 경우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기 때문에 범행이용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및 추적 검거, 금융기관 및 피의자 거주지 등 부근 잠복·검거, 대표통장 명의자 인적사항 파악 및 추적 검거 등의 수사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보이스피싱은 사건에 대한 범죄정보 분석팀과 검거전담 부서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별 사건에 대한 정보분석과 일선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지도 및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검거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불법수집 및 유통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 환전과 송금조직에 대한 단속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신속한 수사의 착수와 수사관련 기법의 개발을 통해 경찰 단속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2009년 5월부터 국제전화 최초접수 통신사의 식별번호 부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휴대폰 국제전화 표시서비스 등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통신제도를 마련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보이스피싱은 주로 중국 및 대만계 등의 아시아계 폭력조직으로 추정되는 해외체류자들에 의해서 무작위로 내국인에게 전화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범죄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3].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중국, 대만과 관련 국가와의 국제공조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의자

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으며, 사건과 관련되는 각종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사전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범죄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향후 보이스피싱은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하여 범죄발생시 파급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기에 대응해야 하며, 검거·국제공조·홍보 등 상호 연계에 의한 종합적인 운영과 대책이 더욱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국제전화 표시 서비스 등의 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나 홍보의 부족으로 고연령층의 인식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의 대상이 되기 쉬운 잠재적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본다.

수사와 기소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최근에는 메신저와 SNS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기가 등장하고 있는바, 통신회사·금융기관·수사기관·언론·시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역할을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성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대만과의 비교 분석”, 형사정책, 제22권, 제1호, 2006.
- [2] 김은경,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I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3] 홍승희, “차명계좌를 중심으로 한 전화금융사기의 법적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2호, 2006.
- [4] 2012년 경찰청 국회제출자료
- [5] 2010년 경찰청 내부자료
- [6] 2008년 경찰청 국회제출자료
- [7] 2012년 경찰청 브리핑 자료.
- [8] 사이버 경찰청(<http://www.police.go.kr>)

### 저 자 소 개

조 호 대(Ho-Dae Cho)

정회원



- 1997년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행정학사)
- 1999년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법학석사)
- 2003년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현재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찰인사, 재난관리, 위기관리, 경찰운용, 경찰조직.